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20
----------	----

제출년월일 : 2022. 9.  
제출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2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2022년 평창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2차 계획은
  - 토지 취득(변경) 1건 5필지  $\Delta 304\text{m}^2$   $\Delta 211,918$ 천원
    - (당초) 평창읍 하리 144번지  $783\text{m}^2$  469,800천원(위치변경에 따라 제외)
    - (변경) 평창읍 하리 116-9번지외 4필지  $479\text{m}^2$  257,882천원
  - 건물 취득 7건 9동  $16,255.115\text{m}^2$  43,710,278천원

## 3. 붙임자료

- 가.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괄표) 1부
- 나. 2022년 제2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1부
- 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서(부서별) 1부
- 라. 관계법령 발취 1부



[붙임 나]

## 2022년도 제2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목록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예정가격	취득 처분 시기	취득처분사유	비 고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량				
토지취득 합계 (1건 5필지)			△304	△211,918			
소계 (1건 5필지)			△304	△211,918			
1	대	평창읍 하리 116-9	146	80,300	2022	군지회 사무실 및 읍분회경로당신축 (변경)	평창군
2	대	평창읍 하리 116-10	238	126,973			
3	대	평창읍 하리 116-27	74	39,479			
4	대	평창읍 하리 119-23	13	6,890			기재부
5	대	평창읍 하리 119-25	8	4,240			기재부
6	대	평창읍 하리 144	△783	△469,800	2022	평창읍분회경로 당신축(기존)	이**외 1
건물취득 합계 (7건 9동)			16,255.115	43,710,278			
소계 (1건 3동)			478.78	1,870,278			
1	대	평창읍 하리 116-9외 1필지	101.34	95,278	2023	군지회 사무실 및 읍분회경로당신축 (변경)	평창군의외 1
2	대	평창읍 하리 116-9외 4필지	750	2,300,000			
3	대	평창읍 하리 144(가~라동)	△222.56	△125,000	2022	평창읍분회경로 당신축(기존)	이**외 1
4	대	평창읍 하리 144	△150	△400,000			
소계 (1건 1동)			550	1,000,000			
1		평창읍 중리 31-4번지의외 20필지	2,950	11,000,000	2023	평창수학 아카데미(변경)	평창군
2		평창읍 중리 32	△2,400	△10,000,000	2022	평창수학 아카데미(기존)	
소계 (1건 1동)			6,000	9,441,000			
1	대	진부면 하진부리 85-1외 5필지	6,000	9,441,000	2023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	평창군
소계 (1건 1동)			6,000	23,100,000			
1	대	대화면 신리 2016외 1필지	6,000	23,100,000	2025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예정가격	취득 처분 시기	취득처분사유	비 고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량				
	소계 (1건 1동)		399.095	1,088,000			
1	대	진부면 하진부리 251-2외 6필지	399.095	1,088,000	2022	평창군건강생활 지원센터 증축	평창군
	소계 (1건 1동)		327.24	1,211,000			
1	대	대화면 대화리 1172-1외 2필지	327.24	1,211,000	2022	대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평창군
	소계 (1건 1동)		2,500	6,000,000			
1	공장 용지	진부면 송정리 2241-2	2,500	6,000,000	2024	평창 특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평창군

[붙임 다]

##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부서	쪽
1. (사)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사무실 및 평창읍 분회경로당 신축(변경)	가족복지과	6
2. 평창수학아카데미아 건립(변경)	일자리경제과	9
3.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	일자리경제과	12
4.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일자리경제과	15
5.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	보건사업과	19
6. 대화면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증축	보건사업과	23
7. 평창 특용작물산업지원센터 구축	유통산업과	28

## [사]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사무실 및 평창읍 분회경로당 신축계획(변경)

- 평창읍 분회경로당 신축을 위해 당초, 평창읍 하리 144번지의 재산 취득을 추진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협의 불가로 사업 위치를 변경하여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며
- 당초 계획한 “1층 규모의 평창읍 분회경로당 신축” 에서 (사)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건의사항 해결 및 효율적인 토지와 공간활용을 위해 “3층 규모의 평창군지회 사무실 및 분회경로당 공동 신축” 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위 치 : 평창읍 하리 116-10 일원
- 매입대상 : (토지) 평창읍 하리 116-10외 4필지, (건물) 2동
- 예정가격 : 2,653,160,300원
- 사업기간 : 2022. 4. ~ 2023. 12.

### □ 검토의견(필요성)

- 대상부지는 평창읍 시내 중심, 문화복지센터 인근에 위치하여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노인여가시설 확충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화합과 쉼터 장소 제공
- (사)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사무실 및 평창읍 분회경로당 공동 신축으로 노인회 건의사항 해결 및 효율적인 공간 활용

### □ 취득대상 재산내역(당초)

#### ○ 토지 1필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재산가액(원)	
					기준가격	예정가격
평창읍 하리	144	대지	783	783	256,041,000	469,800,000

#### ○ 건물 4동

소재지	구분	면적(㎡)	용도	재산가액(원)	
				기준가격	예정가격
총 계		222.56		8,866,312	125,000,000
평창읍 하리 144	가동	45.16	주택	1,776,594	29,000,000
	나동	56.18	주택	2,210,121	35,000,000
	다동	35.02	주택	1,377,686	22,000,000
	라동	86.2	주택,창고	3,501,911	39,000,000

○ 건물 신축 1동

위 치	건 물 명	연면적	주요시설	사 업 비 (천원)
평창읍 144번지	평창읍 분회경로당	150㎡ 이내	거실 겸 주방(1), 방(2) 화장실(2), 다목적실(1)	400,000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설치기준 준용

□ 취득대상 재산내역(변경)

○ 토지 5필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재산가액(원)	
					기준가격	예정가격
합 계			479	479	154,307,100	257,882,000
평창읍 하리	116-9	대지	146	146	50,413,800	80,300,000
평창읍 하리	116-10	대지	238	238	76,279,000	126,973,000
평창읍 하리	116-27	대지	74	74	24,138,800	39,479,000
평창읍 하리	119-23	대지	13	13	2,151,500	6,890,000
평창읍 하리	119-25	대지	8	8	1,324,000	4,240,000

○ 건물 2동

소재지	지번	면적(㎡)	용도	재산가액(원)	
				기준가격	예정가격
합 계		101.34		3,512,390	95,278,300
평창읍 하리	116-9	45.16	단독주택	1,857,540	48,274,550
평창읍 하리	116-10	56.18	단독주택	1,654,850	47,003,750

○ 건물 신축 1동

위 치	건 물 명	연면적	주요시설	사 업 비 (천원)
합계				2,300,000
평창읍 116-9 외	평창읍 분회경로당(1층)	250㎡ 이내	거실 겸 주방(1), 방(2) 화장실(2), 다목적실 등	900,000
	다목적회의실(2층)	250㎡ 이내	대강당(1), 소강당(1) 등	700,000
	평창군지회 사무실(3층)	250㎡ 이내	지회장실(1), 사무실(1), 소회의실(1) 등	700,000

□ 향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2. 12.
- 토지 등 매입(재산 취득) : 2022. 9. ~ 2022.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3. 1. ~ 2023. 12.

붙임 위치도 및 지적도 1부. 끝.

**붙임**

**위치도 및 지적도**

위치도



지적도



- 수학을 테마로 한 청소년 특화체험 시설 건립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 춘천교육대학교, 도교육청, 인근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수학 능력 향상과 전국 단위 학생(교사) 체험 연수단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 사업개요

- 사업 위치 : (당초) 평창읍 중리 32, 노람뜰 일원(군유지)  
(변경) 평창읍 중리 31-4번지 외 20필지, 노람뜰 일원(군유지)
- 사업 규모 : (당초) 연면적 - 2,400㎡, 사업부지 - 6,000㎡  
(변경) 연면적 - 2,950㎡, 사업부지 - 13,314㎡
- 사업비 : 110억원(도비 81, 군비 29)
- 사업기간 : 2020. 1. ~ 2023. 12.

## □ 추진사항

- 기본 프로그램 개발 및 기본 조사 설계 용역 : 2020. 1. ~ 5.
- 2020년 1차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2020. 2.
-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 2020. 11.
-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승인 : 2021. 2.
- 건축 및 전시체험콘텐츠 설계 제안공모 : 2021. 4. ~ 6.
- 건축 및 전시체험 콘텐츠 실시설계 용역 : 2021. 7. ~ 2022. 9.

## □ 검토사항(필요성)

- 교육시설이 부족한 평창군에 수학을 테마로 한 차별화된 청소년 특화체험 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의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수학을 테마로 한 창의수학 특화체험 시설 건립 필요
- 평창 수학아카데미아와 노람뜰 일원 주변 관광지(물환경 체험센터, 에코랜드 등)를 연계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위치를 변경하여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최적합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규모를 변경하고자 함.

## □ 향후계획

- 공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인허가 등 : 2022. 9. ~ 10.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2. 11. ~ 2023. 12.

## □ 취득대상 재산내역

○ 건물(신규 건립)

(단위:㎡,백만원)

구분	시설명	위치	연면적	규모	구조	사업비
당초	평창수학아카데미아	평창읍 중리 32	2,400	지상2층	철골조	10,000 (국2,000) (도6,000) (군2,000)
변경	평창수학아카데미아	평창읍 중리 31-4번지 일원	2,950	지상3층	철골조	11,000 (도8,100) (군2,900)

## □ 지적도



# □ 위치도



- 진부전통시장의 주차공간 부족 및 노면주차에 따른 지역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고,
- 내방객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로 진부전통시장을 평창북부권 대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위 치 :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85-1 외 5필지
- 사업량 : 주차타워 신축 1식(3층4단, 연면적 약 6,000㎡)
  - 주차면수 : 190면
- 총사업비 : 9,441백만원(국비 5,665, 도비 1,132, 군비 2,644)
  - 건축기획 용역 : 23,256천원
  - 실시설계용역 : 299,412천원
  - 건축공사비(전기·소방·기계·통신 등 부대공사 포함) : 8,500,000천원
  - 건설사업관리 용역 : 618,332천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 추진사항

-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주차타워 건립 부지 매입의 건) : 2019. 12월
- 주차타워 건립부지 토지 보상 : 2020. 3월 ~ 9월
- 공모사업(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 2020. 9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심의 : 2020. 11월
-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 공공건축 심의 : 2021. 6월
- 실시설계 용역 : 2021. 10월 ~ 2022. 8월

### □ 검토사항(필요성)

- 코로나 19의 종식이후 진부전통시장에 평창북부권 관광지 및 축제장 내방객의 방문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주차공간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하다 판단됨.

## □ 취득대상 재산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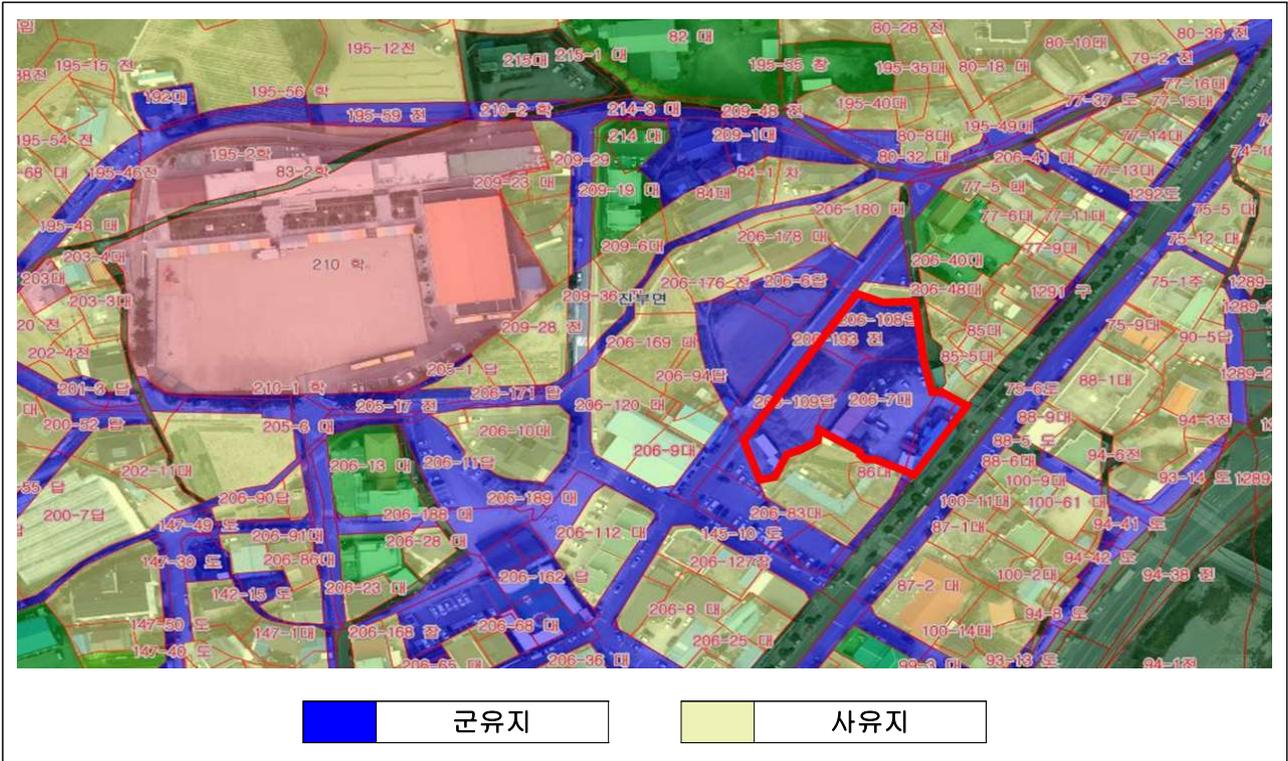
○ 건축물 : 주차타워 신축 1식

토 지 소 재	지번	사업면적	사업내용	재산가액 (사업비)	비 고
진부면 하진부리	85-1, 206-7, 206-108, 206-109, 206-193, 1291-14	주차타워 건축물 연면적 : 약 6,000㎡	주차타워 신축 1식 (3층4단, 주차면수 190면)	9,441백만원	

## □ 향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 2022. 9월
-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 승인 : 2022. 9월
- (강원도)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022. 9월
- 안전보건대장 작성 용역 시행 : 2022. 9월 ~ 10월
- 건축허가 : 2022. 10월
- 감리용역사 선정(PQ 및 적격심사) : 2022. 10월 ~ 11월
- 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착공(착수) : 2022. 12월
- 공사 및 감리용역 준공 : 2023. 12월
  - 공사기간 10개월 소요, 동절기(3개월간) 공사·용역 중지 계획

## □ 지적도



## □ 위치도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으로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국내외 유망 벤처기업 적극 발굴 및 유치로 초기 창업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종합 지원
-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그린바이오 글로벌 혁신 거점도시 도약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 사업위치 : 평창군 대화면 신리 2016, 2017(서울대학교 산학협력부지)
- 사업비 : 231억 원(국비 161, 도비 21, 군비 49)
- 사업규모 : 부지 18,765㎡, 건축연면적 6,000㎡(지하1층, 지상3층)
- 사업내용 : 벤처(스타트업) 보육·창업 전문시설, 사무실·공동(독립)연구실
- \*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육성 : 전북 익산(2021), 강원 평창(2022), 경북 포항(2022)

### □ 추진상황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공모 유관기관 협약(11개 기관) : 2022. 3. 31.  
\* 협약기관(11) : 강원도, 평창군, **강원테크노파크(운영)**,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병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원농식품벤처창업센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연구원, 신한은행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공모사업 선정 : 2022. 5. 2. \* 농림축산식품부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 2022. 8. 4.
-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의뢰 : 2022. 8. 5.

### □ 검토사항(필요성)

-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의 활용을 극대화할 신산업 육성 필요
- 우리 군은 초고령화로 청·장년층의 타 지역 유출의 악순환이 심각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규모 확대 절실

## □ 취득대상 재산내역

○ 건축물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신축 1식

토 지 소 재	지번	사업면적	사업내용	재산가액 (사업비)	비 고
대화면 신리	2016, 2017	건축물 연면적 6,000㎡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신축 1식 (지하1층, 지상3층)	231억원	

\* 부지(서울대학교 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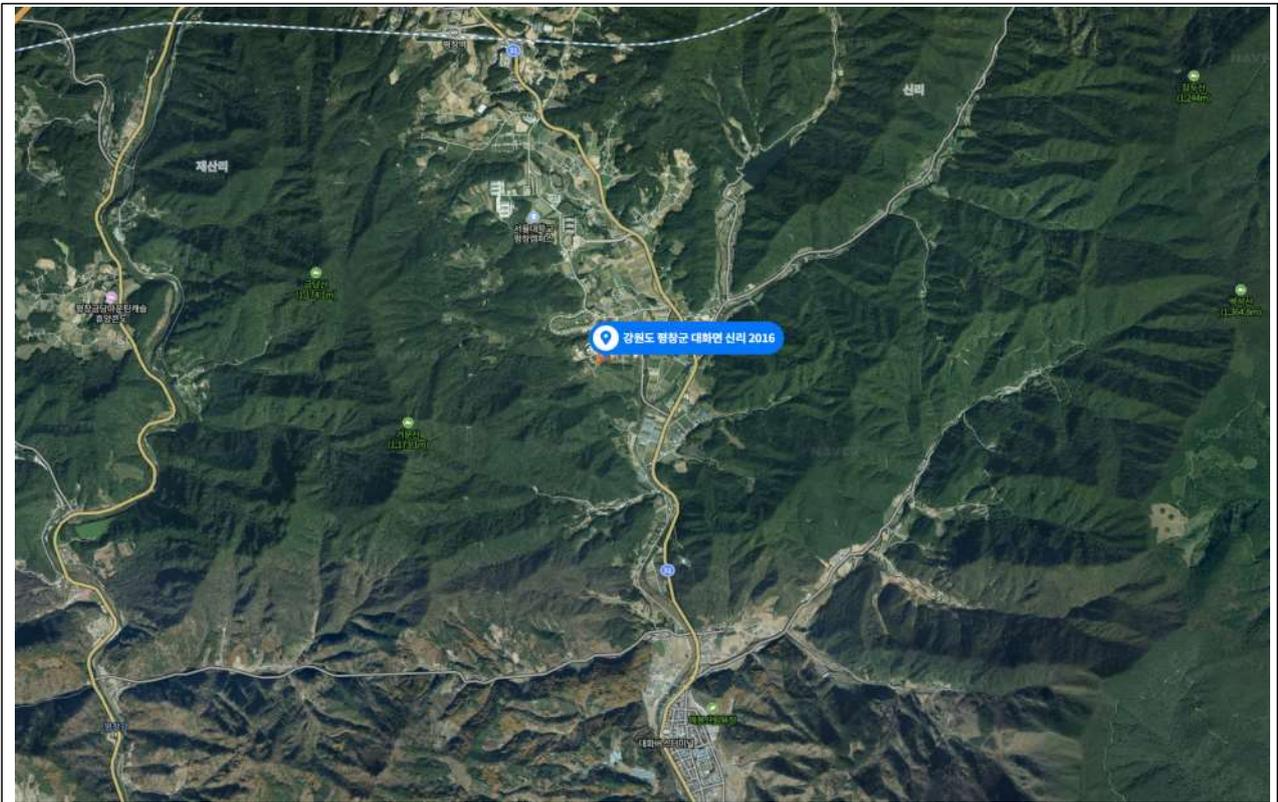
## □ 향후계획

-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 완료 : 2022. 10 25.
- 「강원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육성」 비전 선포 : 2022. 10.
  - 강원도, 평창군, (재)강원테크노파크,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강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업무위탁 협약 : 2022. 10.
  - 강원도, 평창군, (재)강원테크노파크
- 평창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22~25) : 2022. 11.
- 건축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승인 : 2022. 12.
- 건축설계 공모 및 설계안 선정 : 2023. 1. ~ 3.
- 기본 및 실시설계, 공동연구실 장비 리스트 확정 : 2023. 4. ~ 9.
-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2023. 10. ~ 12.
- 공사착공 및 준공, 연구장비 설치, 입주기업 선정 : 2024. 1. ~ 2025. 10.
- 시범운영 및 개관 : 2025. 12.

## □ 지적도



## □ 위치도



□ 항공사진



- 지역주민 주도형 건강관리 참여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및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생활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생활터 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함
- 공사단가 현실화 866백만원 ⇒ 1,088백만원(증액 222백만원) ※2022회추경 확보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8. ~ 2022. 12.
- 사업위치 :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251-2외 6필지(건강생활지원센터)
- 사업규모 : 수직증축 3층(현 지상2층), 증축연면적 399.095㎡
- 총사업비 : 1,088백만원(국비 578 도비 144 군비 366)
  - ※ 당초 : 866백만원(국비 578 도비 144 군비 144)
- 사업내용 :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운영
  - 기존 건강생활지원센터 인프라에 건강증진 보건사업 확대 운영을 위한 시설 확충
- 주요시설 : 어르신 치매·정신건강증진실, 건강상담실, 보건교육실, 회의실 등

## □ 추진사항

- 2021. 6. : 「2022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개선 공모 신청(보건복지부)
- 2021. 9. : 「2022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개선 현지확인
- 2021. 9. : 2022년 국비지원 대상기관 선정
- 2021. 12. : 2022년 국고보조금 확정
- 2022. 3. : 증축 부족사업비 2022. 2회추경 확보(222백만원)
  - 지원단가(2,165천원/㎡) 대비 공사단가 현실화 반영(2,720천원/㎡)
- 2022. 2. ~ 5. :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 설계용역
- 2022. 7. : 강원도 계약심사
- 2022. 8. : 공사 착공

## □ 검토사항(필요성)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활성화에 따른 부족공간(어르신 건강증진실, 강의·운동실 등) 및 정신건강질환 치유를 위한 북부권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분소 설치 운영을 위한 필요공간 확보
- 「2022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시설개선」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국비지원 건축단가(2,165천원/㎡) 대비 공사단가 현실화 (2,720천원/㎡)에 따른 증축 부족사업비 반영(2022. 2회 추경)
  - ▶ 사업비 (당초) : 866백만원(국비 578 도비 144 군비 144)
  - (변경) : 1,088백만원(국비 578 도비 144 군비 366) ※ 증 222백만원(군비)

## □ 취득대상 재산내역

### ○ 건물(신축)

(단위 : ㎡,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연면적 (㎡)	재산가액	준공일	소유자
진부면 하진부리	251-2외 6필지	대	6,397	903.17	1,680,000,000	2018.12.24.	평창군

### ○ 건물(증축)

(단위 : ㎡,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증축 연면적 (㎡)	재산가액(예정가격)		취득 시기	소유자
					당초	변경		
진부면 하진부리	251-2외 6필지	대	6,397	399.095	866,017,000	1,088,000,000	2022년 (하반기)	평창군

## □ 향후계획

- 증축공사 : 2022. 8. 19. ~ 12. 16. (120일)
- 건강증진장비 확충 : 2023. 1. ~ 2.
- 건강증진사업 확대 운영 : 2023. 3. ~

붙임 : 지적도 및 위치도 등 1부. 끝.

□ 지적도(건물증축)



□ 위치도



# 배치도



# 조감도



- 기존 진료 위주의 보건지소에 '건강증진' 기능을 보강한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전환 운영, 건강증진 보건사업 확대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 질병 사전예방 및 건강수준 향상 도모
- 국도비 증축사업 추진 관련, 추가공사분(연결통로 등)에 대한 사업비 부족 (당초) 881백만원 ⇒ (변경) 1,211백만원 ※ 증 330백만원(2022.3회추경 반영)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8. ~ 12.
- 사업위치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172-4외 2필지(대화보건지소)
- 사업규모 : 수평증축 1동(지상 1층), 증축연면적 327.24㎡
- 총사업비 : 1,211백만원(국비 469 도비 117 군비 625)  
※ 당초 : 881백만원(국비 469, 도비 117, 군비 295)
- 사업내용 : '건강증진' 기능을 보강한 「건강증진형보건지소」 로 전환 운영
- 주요시설 : 영양교육실, 운동처방실, 건강상담실, 보건교육실, 회의실 등

## □ 추진사항

- 2021. 6. : 「2022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개선 공모 신청(보건복지부)
- 2021. 6. : 대화면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증축부지 확보(2,146㎡)
- 2021. 9. : 2022년 국비지원 대상기관 선정
- 2021. 12. : 2022년 국고보조금 확정
- 2022. 1. ~ 6. : 설계용역
- 2022. 7. : 강원도 계약심사
- 2022. 8. : 평창군공유재산심의회(원안의결)
- 2022. 8. : 공사 착공

## □ 검토사항(필요성)

- 의료접근성 향상 및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에 따라, 진료에서 확장된 보건지소의 다양한 역할 수행 필요 ⇒ 기존 보건지소 인프라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기능을 확대한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건강증진형 보건지소)  
 ※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전환 운영 : 양구군( '21년), 홍천군·화천군·횡성군·철원군( '22년)
- 「2022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시설개선」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기본설계 심의 시 연결통로 면적(43.66㎡, 19.2M)의 국비지원 제외 및 주변 정비를 위한 부대공사 추진 부족사업비 반영(2022. 3회 추경)  
 - 사업비 (당초) : 881백만원(국비 469 도비 117 군비 295)  
 (변경) : 1,211백만원(국비 469 도비 117 군비 625) ※ 증 330백만원(군비)

## □ 취득대상 재산내역

- 건물(수평증축/별동)

(단위 : ㎡,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증축 면적 (㎡)	재산가액		취득 시기	소유자
					기준가격	예정가격		
대화면 대화리	1172-4외 2필지	대	3,463	327.24	1,211,000,000	1,211,000,000	2022년 (하반기)	평창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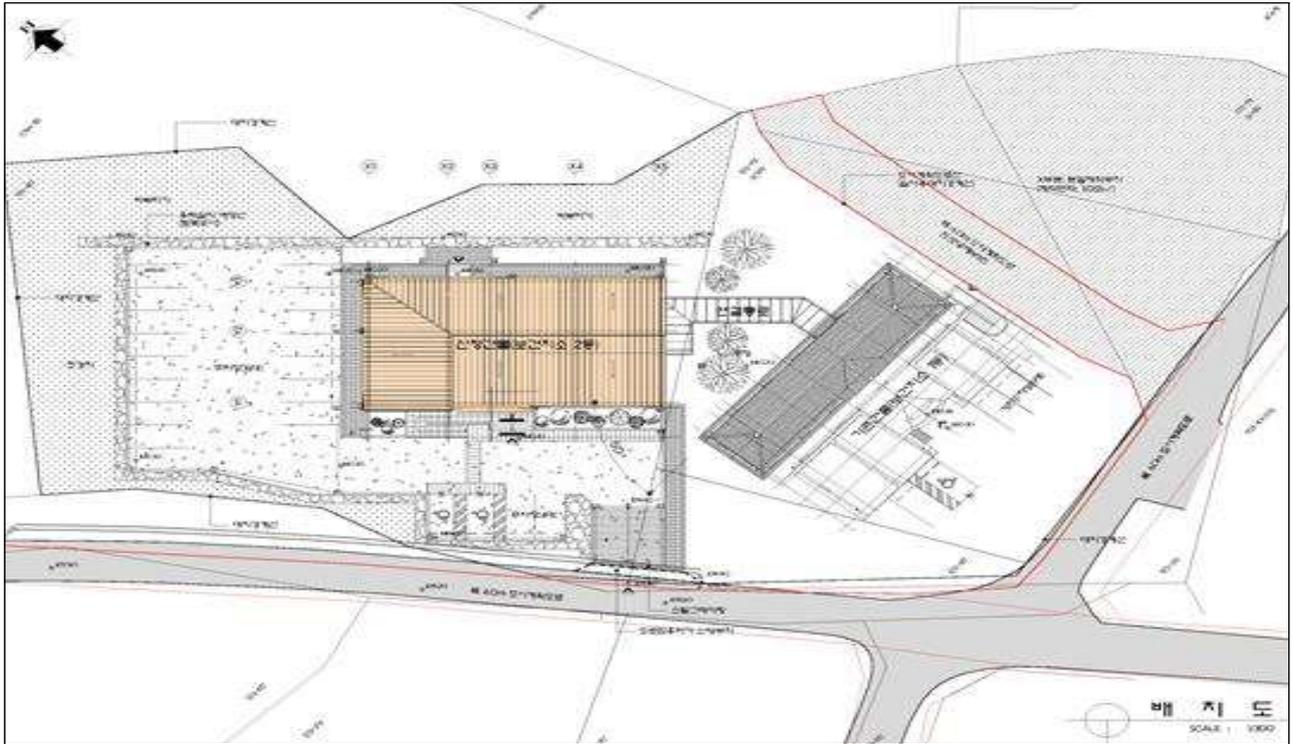
## □ 향후계획

- 증축공사 : 2022. 8. 30. ~ 12. 27. (120일)
- 증축 부족사업비 2022. 3회추경 반영(330백만원) : 2022. 9.
- 건강증진장비 확충 : 2023. 1. ~ 2.
- 건강증진형보건지소 건강증진사업 확대 운영 : 2023. 3. ~

붙임 : 지적도 및 위치도 등 1부. 끝.



# □ 배치도



# □ 조감도



□ 투시도



- 관내 특용작물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특용작물산업화를 통한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 및 신성장산업 육성
- 생산자, 유통시설 및 산업화시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관내 특용작물 고부가가치 창출 및 생산·수급·유통체계 안정화 기여

## □ 사업개요

- 위 치 :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241-2번지
- 사업량 : 1식(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연면적 2,500㎡)
  - 1층(1,750㎡) : GMP시설(660㎡), 특용작물 제품화시설(660㎡), 홍보·판매·전시시설 및 공용공간(430㎡)
  - 2층(750㎡) : 연구실(488㎡), 사무실 및 회의실(262㎡)
- 사업비 : 6,000백만원(국비 3,000, 도비 600, 군비 2,400)
- 사업기간 : 2022. 8월 ~ 2024. 12월(3년차 사업)

## □ 추진사항

- 평창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구축 검토 및 계획수립 : 2021. 10.
- 국비공모사업 최종선정 : 2021. 12.
-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 2022. 6.

## □ 검토사항(필요성)

- 전국 재배량의 75%를 차지하는 당귀의 주산지로서 생산기반 조성 성과를 바탕으로 가공, 유통 및 판매 등 특용작물산업의 6차 산업화와 상품 개발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연계 산업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
- 산업화센터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원물 수급 확대, 시장 경쟁력 제고를 통해 재배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 취득대상 재산내역

### ○ 건물(신축)

(단위 : m<sup>2</sup>,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재산가액		취득 시기	소유자
					기준가격	예정가격		
계		공장 용지	21,622	2,500	6,000,000,000	6,000,000,000	2024년 (하반기)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241-2 번지	공장 용지	21,622	2,500	6,000,000,000	6,000,000,000	2024년 (하반기)	평창군

## □ 향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2. 9. ~ 2023. 3.
- 평창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구축(신축) 및 준공 : 2023. 3. ~ 2024. 3.
- 설비 및 장비 구축 : 2024. 3. ~ 2024. 10.
- 평창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 2024. 11월(예정)

□ 지적도(건물신축)



□ 위치도(예정부지)



평창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신축) : 진부면 송정리 2241-2번지

[붙임 라]

## 〈관계법령 발췌〉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